

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내용상 불부합한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조문개정(다른 조례나 규칙에 → 다른 조례에)

첨 부

1.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'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다른 조례나 규칙에”를 “다른 조례에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) ①(생략)</p> <p>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<u>다른 조례나 규칙에</u>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..... <u>다른 조례에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